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- 122호

「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」전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30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

1. 제안이유

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나.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.

- 다.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아이돌봄의 수요와 아이돌봄 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.
- 마. 대전광역시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- 바. 대전광역시 아이돌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.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복지환경 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

(전화 042-270-5127, FAX 042-270-5039, E-mail: ychml1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· 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아이"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 - 2. "아이돌봄"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·양육,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 그램, 급·간식, 맞춤형 정보·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대전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아이돌봄 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아이돌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
- 2.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- 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
- 4. 아이돌봄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분석·평가
- 5. 그 밖에 아이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시장은 아이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 관에 의뢰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5조(아이돌봄 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 - 1. 영유아·초등 돌봄사업
 - 2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지원
 - 3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
 - 4.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
 - 5. 육아정보 제공·상담 및 교육
 - 6.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
 - 7.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 구 또는 아이돌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- 제6조(아이돌봄 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아이돌봄의 수요와 아이돌봄 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·운영

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아이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아이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요건을 갖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7조(원스톱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 - 1. 아이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아이돌봄 서비스 통합 연계
 - 2. 품앗이 공동육아 커뮤니티 활성화
 - 3. 맘코치 양성
 - 4. 배달강좌
 - 5. 그 밖에 대전형 아이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수 있다.
- 제8조(협의회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이돌봄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아이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아이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
 - 3.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

- 4.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
-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당연직위원은 공동체지원국장이 되며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- 1.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
- 2. 대전광역시교육청 아이돌봄 지원 사업 관련 실 ·국장
- 3. 아이돌봄과 관련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
-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9조(협의회 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

조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⑤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소집한다.
-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, 간사는 아이돌봄업무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.
- 제10조(운영세칙)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전광역시 아이돌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대전광역시 아이돌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이돌봄협의회로 본다.

관계 법 령

「아이돌봄 지원법」

[시행 2019. 7. 1.] [법률 제15270호, 2017. 12. 19., 타법개정]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아이돌봄 지원의 원칙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
- 제4조(국가 등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)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 기관(이하 "서비스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, 인력,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 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,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.
 -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 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.

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」

[시행 2015. 1. 1.] [대통령령 제25840호, 2014. 12. 9., 타법개정]

- 제5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 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한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할수 있다.
 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 위탁한다.
 - 1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
 - 2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

「아동복지법」

-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수 있다.
 - 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
- 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- 3. 등 · 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- 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- 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-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